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의회 의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

내 용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각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총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28호, 2015. 7. 21.)」에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9가지⁸⁾로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2015. 4. 14. “지방예산제도의 운영” 설명회 시 배부한 교육교재를 통하여 “지방재정 종합 점검결과⁹⁾”를 토대로 의정활동비에

8)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9)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15.3.13.~3.20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로써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017(2015.4.16.)호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함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휴대폰 통신요금, 교통비 등)을 별도 편성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상급기관 감사 시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므로 휴대폰 통신요금을 별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이와 같이 부적정한 예산에 대해 지방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경우 경기도는 이를 부동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의원에 대한 휴대폰 통신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2015. 11. 6.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12. 1. “201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명 “의정 스마트 소통 지원(예산액 153,600천원, 128명×10만원×12월)”을 신규 편성하여 의결하였으며 2015. 12.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16. 1. 28. 도의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동 통신비 지원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부동의 하지 않음으로써 경기도의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예산 153,600천원이 최종적으로 2016년 예산에 반영¹⁰⁾되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이미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도의원들의 강력한 요구¹¹⁾에 따른 한계 등을 이유로 2016. 2. 4. 도의회가 편성한 예산내용대로 의원 1인당 월 10만원까지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의원 본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16. 2. 11. 이동통신사에 분리 납부(10만원 이내와 초과분 분리)를 신청하

10) 201-02 공공운영비

11) △의정활동비 150만원은 13년째 인상 없이 동결되고 있는 점, △스마트폰으로 의사일정 및 공지사항 확인, 회의록 및 자치법규 검색, 회의 인터넷방송 시청, SNS를 통한 지역주민과 대화 및 의견수렴, 이메일 송·수신 등을 많이 사용함으로 데이터 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회 활성화로 의정수요가 급증(경기도의회 의안건수 제7대 의회 1,069건, 제8대 의회 1,528건, 제9대 의회 1,900건 예상)하여 통신비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인전화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는 점 등

기 위한 의원 정보를 10개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6. 2. 23. (주)○○○, (주)○○, (주)○○○○○○○ 등 각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요금 분리납부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는 2016. 3. 29. 경기도의원 113명의 2016. 2월 휴대폰 통신 통신요금 9,290,650원을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였고, 2016. 4. 25.에는 의원 114명의 2016. 3월 이용 통신요금 7,255,290원, 2016. 5. 24일에는 의원 122명의 2016. 4월 이용 통신요금 8,623,050원을 각각 납부함으로써 총 25,168,990원의 휴대폰 통신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휴대폰 통신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